

의안번호 제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9. 11. 15.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호

제출연월일: 2019. 11. 15. 제 출 자: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정리 및 사용료 미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반환기준 및 사용료를 완화하여 시민의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공설 운동장" 용어를 "동고 동락 시민운동장"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문 수정(안 제1조~제2조)

- 나. 용어정비에 따른 별지 용어정비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 다.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료 미 반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문수정(안 제11조 제1항, 제2항)
- 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반환기준 완화 (안 제11조제1항제1호)
- 마.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운동장 전용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정비(별표 1. ~ 별표 2.)
- 바. 환불요청에 대한 규정 조문 및 별지추가 (안 제11조제3항) [별지 제6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의 성별기재란 서식 마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의견 있어 반영하였음.

(3) 규제심사: 대상아님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19.09.25. ~ 2019.10.16. (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체육진흥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 ·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관리 조례"를 "논산시 동고동락 시민운동장 운영·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설운동장"을 "동고동락 시민운동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설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을 "동고동락 시민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 해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 까지 사용신청을 취소 하였을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이용)자가 이용도중 환불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환불해야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간 부 서			성	码
입	공공.	시설사업	소장	유	신	황
안	공설	운동장	팀장	남	기	호
자	담	당	자	박 (04	창 1-746-	열 8413)

[별표 1]

동고동락 시민운동장 전용사용료 (제8조 관련)

(단위:원)

시설물	AL S	 용 구 분	사용	용 료	. U 고	
시설물	\r \{\bar{\}\}	5 T E	공휴일,토요일	평 일	01 12	
	ના ૦ ઝ ગ	육상경기장 (트랙)	100,000	50,000		
동고동락	체육경기	축구장(필드)	200,000	150,000	·평일주간기준 ·아간사용시 사용료의	
시민운동장	체육외	육상경기장 (트랙)	150,000	100,000	50%가산	
	경기	축구장(필드)	300,000	200,000		

[별표 2]

부대시설 사용료 (제8조 관련)

(단위:원)

시 설 명	기 본 료	U ¬Д
이 향	50,000	
전 광 판	50,000	
전 기	30,000	·해당 기본료에 실제 사용 전기 요금을 부과한다
수 도	30,000	

[별지 제1호서식]

동고동락 시민운동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주소										
신청인	단체명				전화	<u> </u>					
	(대표자)				생년	월일			성	병별	남 , 여
사용 시설명	동고동력	낙 시민운	동장 (트	랙, 달	틸드), 기	기타(•)
경기 (행사)명											
사 용 기 간		년 월	일	八	부터	년	월	일	人	까지	
사 용 자 명							사된	용인원			명
부대시설 사용											
임원·지도요원		임원 :			지도요	원 :		ļ	방송.	요원	:
	=	특별 관람	권 (초대	권)				원			OH
	개 인	어 른					원			OH	
관람권 발매신청	게인	어린	!이, 청소	년,	군인			원			OH
	단체		어 튼	≣_				원			OH
		어린	[이, 청소	<u>-</u> 년, -	군인			원			OH
변경신청시 내용											
기 타 사 항											
사 용 료					납부 '	일자		년	뒫	월 (일

논산시 동고동락 시민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별지 제2호서식]

동고동락 시민운동장 사용허가서

담당부서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허가 번호	제 호					
주 소						
서대 (미끄기)	전 화 번 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허가시설	사용구분					
사용허가내용	사용허가 부대시설					
경기(행사)명						
사용 기간						
기타 사항						
사 용 료	납 부 일 자					
허가 조건	 ' 논산시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행사장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주차장 통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집회등의 사용시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 우천시(필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서설물 훼손 및 파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동고동락 시민운동장내에서는 음식물 조리 및 반입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 사용 후 논산시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분리수거 및 주변청소를 깨끗이 하셔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소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부의 경비등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만일 사용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논산시 동	고동락 시민운동장 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논산시 동고동락 시민운동장 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별지 제3호서식)

동고동락 시민운동장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제4조 관련)

접 수	접 수	신 청	신 청	자		신 청	내 용		 	: J
번	월 일	구 분	주 소	성 명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별지 제4호서식)

동고동락 시민운동장 사용 허가대장(제4조 관련)

허가	허가	허가구	허 가	자		허 가	내 용		1107	ш. <u>Т</u>
번 호	월 일	ИI	주 소	성 명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별지 제5호서식)

관람권의 검인 신청서(제9조 관련)

 논산시 동고동락 시민운동장에서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최예정인 경기(행사)에 사용할 관람권에 대한 검인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관 람 권		수	량	
일 반 인			매(예매	매)
	어린이		매(예 매	매)
어린이 · 학생 · 군인권	학 생		매(예매	매)
	군 인		매(예매	매)
권			매(예매	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인)

[별지 제6호서식]

반 환 신 청 서(제11조 관련)

		사용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주 소			연락처	
성 인	단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반환 사유				계좌번호	

위와 같이 논산시 동고동락 시민운동장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신구조문 대비표

행 개 정 안 혂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논산시 동고동락 시민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공설 제1조(목적) ------동고동락 시민 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운동장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논산시 공설운동장 제2조(위치) ---- 동고동락 시민 (이하"운동장"이라 한다)은 논산 운동장 (이하"운동장"이라 한다) 시 체육로 110(취암동)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제10조(사용료면제 제3조(정의)~제10조(사용료면제 등) (생략) 등)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반환)①이미 납부한 제11조(사용료 반환)①------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 -----어느 하 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해야 다.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 1. -----사용 전일까지 -----시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 하였을 경우 50퍼센트를 공제 ----- 사용료 전액을 한 후 반환한다. 그 이후에 취소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사 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용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 경 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현 행	개 정 안
 2. ~ 4. (생 략) ②사용(이용)자가 이용도 중 환불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환불하여 주지 아니한 다. 	2. ~ 4. (현행과 같음) ②어느 하나 어 해당하는 경우는 환불 해야 한다.
1.~ 2. (생 략) <u>〈신설〉</u>	 1.~ 2. (현행과 같음) ③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31조(시행규칙) (생략)	제31조(시행규칙)(현행과같음)

		ট্	<u>터</u>		행								개	정	안		
별표1	. ^	- 별	丑	2.				Ļ	별표	1.	~	별.	丑	2.			
〔별표		<u>운동</u> 전	<u> 전</u>	용사용	<u>료</u> (제8	조 관련) (단) <u></u> 위:원)		至皇〕 <u>こ子</u>			시민	<u>운동</u> ?	장 전용	·사용료	. (제8조 (: 관련 단위:육
				사 원	를 료									사용	를 료		
시설물	사	용 구	분	공휴일,토 요일	평 일	Ы	고		시설물		사	용 구	분	공휴일,토 요일	평 일	Ы	고
	체육	육상경		100,000	50,000					Ţ	체육	육상경 (트		100,000	50,000		
공설운동장	경기	축구장((필드)	200,000	150,000	·평일주간기준 ·아간사용시 <i>사</i>			동고동릭	<u> </u>	병기	축구장((필드)	200,000	150,000	·평일주간기: ·야간사용시	
5200	체육 외	육상경		300,000	200,000	50%가산 • 조기 사용시	30% 감산		민운동	_	세육 외	육상경 (트 ⁹		150,000	100,000	50%가산	
	경기	축구장(필드) 600,000 400,000								병기	축구장((필드)	300,000	200,000			
〔별표	2)	<u>부대</u>	시설	사용료	로 (제82	조 관련) (단	<u></u> 위:원)		〔별五	E 2		<u>부대</u>	시설	사 용 료	<u>년</u> (제82	조 관련) () 단위:욱
시설 명	まっ	본 료			Ы	고			시 설	명	기	본 료			Ы	고	
이 현	it 5	50,000	·마이: 추가	크 개수당	5,000원				ᅇ	향	50),000					
전 광 핀	단 5	50,000							전 광	판	50	0,000					
전 기	1 3	30,000		기본료에 요금을 ^트	실제 사용 부과한다	3			전	기	30),000		기본료에 요금을 박		3	
	1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설운동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

						_
	주소					
신청인	단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 시설명	공설운	동장 (트랙,	필드), 기 타 ()	
경기 (행사)명						
사 용 기 간	Ų	크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자 명				사용인원		명
부대시설 사용						
임원 · 지도요원	임	원 :	지도요원	!:	방송요원 :	
	=	[별 관람권 (초대권)	원	OH	
	개인	ОН	른	원	OH	
관람권 발매신청	개인	어린이, 청	!소년, 군인	원	OH	
	단체	ОН	른	원	OH	
	크제	어린이, 청	!소년, 군인	원	OH	
변경신청시 내용						
기 타 사 항						
사 용 료			납	.	년 월 일	

<u>논산시 공설운동장</u> 운영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논산시장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동고동락 시민운동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

	주소											
신청인	단체명				전화번	호						
	(대표자				생년월	일				성	별님	,여
사용 시설명	동고동	락 시민	운동장	(트랙	, 필드)	, フ	타	()	
경기 (행사)명												
사 용 기 간	Į	크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Υl	까지	
사 용 자 명							사	용인원				명
부대시설 사용												
임원 • 지도요원	2	원 :			지도요	원 :				방송	요원	:
	=	별 관련	랑권 (초	대권)				원			OH	
	개인		Ю	른				원			OH	
관람권 발매신청	개원	^{게 근} 어린이, 청소년, 군					원				0	
	단체		Ю	른				원			0	H
	근제	어린	[이, 청:	소년,	군인			원			0	#
변경신청시 내용												
기 타 사 항												
사 용 료					III OII	¦ 부 ! 자		ļ	3	월	일	
						- /4						_

<u>논산시 동고동락 시민운동장</u> 운영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하가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혀 행 개 정 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동고동락 시민운동장 사용허가서(제4조 관련) 공설운동장 사용허가서(제4조 관련) 담당부서 담당부서 책 임 자 책 임 자 담 당 자 담 당 자 연락처 연 락 처 허가 번호 제 ₽ 허가 번호 제 ₽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성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사용허가시설 사용구분 사용하기시설 사용구분 시용하기 18 사용취가 부대시석 사용하기내용 사용허가 부대시설 경기(행사)명 경기(행사)명 사용 기간 사용 기간 기타 사항 기타 사항 사 용 료 납 부 일 자 사 용 료 난 부 일 자 논산시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체육시설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주차장 통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주차장 통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집회등의 사용시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각종집회등의 사용시는 관련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천시(필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우천시(필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 훼손 및 파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 훼손 및 파손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허가 조건 ·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허가 조건 동고통락 시민운동장 내에서는 음식물 조리 및 반입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사용 후 논산시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분리수거 및 주변청소를 깨끗이 하셔야 <u>공설운동장</u>내에서는 음식물 조리 및 반입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 사용 후 논산시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분리수거 및 주변청소를 깨끗이 하셔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소비용을 별도로 부당하여야 합니다.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소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 외부의 경비등 질서유지에 이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 외부의 경비등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만일 사용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만일 사용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이 주최측에 있습니다. 책임이 주최측에 있습니다. 논산시 동고동락 시민운동장 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논산시 <u>공설운동장</u> 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논산시장

				•	 현			행									개	 정	Ċ)}			
	(별	[지	제3	호서스	1)							((増/	시 2	¶3ड़	호서식)							
-	공실	설운	동장	<u> 사용</u>	·허가	신청	접수	대장((제4조	- 관	련) 	,	동	고동	락	시민운동	<u>등장</u>	나용허.	가신청	접수	대장(>	제4조	관련)
	접수	접수	신청	신 :	청 자		신청	내용					접 수	접 수	신청	신 청	자		신 청	내용			
	되 (이	원 인	구분	주 소	성 명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F 35 (0)	म लग हम	0 T H	주 소	성명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																							
-																							
-																							
([호서식] 동장 /		허가 [·]	대장(:	제4조	: 관련	<u>!</u>)		(호서식) 시민 윤		<u> </u> 사	용 허	가대?	장(제4	4조 국	관련)
	허가 번	허가 월	허가 쿠	혀 가	자		허 가	내 용 		사용료	비고		허기 번	· 허가 월	허가 구	허 가	자		허 가	내 용		사용료	비고
	l (A)	미	분	주 소	성 명	사용시설	사용목적 .	사용기간		,01	0,1		호	a 00	분	주 소	성명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간	Nem	0112
-																							
-																							
-																							

현 	행			개 >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관람권의 검인 신 청	<u>청서</u> (제9조 관련))	(별지 제5호서스 <u>관람권</u>		<u>청서</u> (제9조 관련	년)
드산시 <u>체육시설(</u>)에서 년 월 일까지 개최예정인 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논산시 <u>동고동락 시민</u> 20 년 월 일 ⁷ 와 같이 신청합니다.		월 일부터 (행사)에 사용할 관람권에	대 한 검인을
			판 람 권		수 광	
판 람 1	권		일 반 인		,	매(예대 매)
일 반 권	매(예 매	매)		어린이	,	매(예매 매)
			어린이 · 학생 · 군	인권 학생		매(예매 매)
거린이·학생·군인권	매(예매	매)		군 인		매(예매 매)
) O 권 년 월	매(예매	매)	권		,	매(예대 매)
E E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신청자 =		
			논산시장	귀하		
<u>〈신설〉</u>			(별지 제6호서스)	너 (제11조 관련 _/)
<u>〈신설〉</u>			(별지 제6호서스) 환신청/	서 (제11조 관련 ₎ _{반환신청서})
<u>(신설)</u>			(별지 제6호서스 반) 환 신 청 / ^{사용료}		
<u>(신설)</u>			(별지 제6호서스 반) 환신청/ 사용료 소	반환신청서	N
(신설)			(별지 제6호서스 반) 환신청/ 사용료 소	반환신청서 연락치 생년월	N
〈신설〉			(별지 제6호서스 반) 환신청/ 사용료 소 명 자)	반환신청서 연락치 생년월	일 까지
<u>(신설)</u>			(별지 제6호서스 반 반 신 청 인 (대표 사용기간 반환 사유) 환신청/ 사용료 소 역 자)	반환신청서 연락 <i>차</i> 생년월 부터 년 월	일 까지
〈신설〉			(별지 제6호서스 반 반 신 청 인 (대표 사용기간 반환 사유) 환신청/ 사용료 소 명 :자) 년 월 일 고동락 시민운동점	반환신청서 연락2 생년월 부터 년 월 계좌번	일 까지
<u>(신설)</u>			(별지 제6호서스 반 반 신 청 인 (대표 사용기간 반환 사유) 환신청/ 사용료 소 명 :자) 년 월 일 고동락 시민운동점	반환신청서 연락: 생년월 부터 년 월 계좌번 상 체육시설의 사용료	일 일 까지 호 반환을 신청합

붙임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 2. 비용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나. 추계결과
- 3. 작성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유 신 화

참고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2

관련 공문(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
- (문제점) 법령 위반 및 소극행정 유발로 주민 불편 및 권익침해 발생
 - (법령 위반)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
 - (소극행정 유발)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불분명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반환하더라도 지자체의 손해가 없어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까지 미반환규정을 근거로 반환 거부
 - ⇒ 이로 인한 주민 불편 및 권익침해 발생
- (정비필요성)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 권익 보호 필요
 - ⇒ 자치법규 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추진